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의회

#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7-1
----------	------

발의연월일 : 2014. 9. 15.

발 의 자 : 이한구 의원  
( 찬성자 인)

## 제안(수정)이유

- 인천 특성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이 전액 삭감됨
- 혁신학교 관련예산을 혁신학교 준비교 지원, 사이버 연수,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이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민선 2기 교육감을 지지한 인천시민의 열망 또한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제안함.

## 제안(수정)내용

-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예산 2억 4,588만원을 감액에서 제외하고 예비비에서 감액하고자 함.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출예산안 중 교육비특별회계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관련 예산 및 혁신학년(군) 공모운영예산, 혁신동아리 공모운영예산 245,880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45,880원을 감액한다.

### <교육비특별회계 증액>

정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 교육과정개발운영

세부) 특색교육과정운영

-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혁신학교 관련)

당 초 : 245,880천원

예결위안 : △245,880천원

수 정 안 : 245,880천원

###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감액>

정책) 예비비

단위) 예비비

세부) 예비비

- 혁신학교 관련사업 지원 증액을 위한 예비비 감액

당 초 : 0천원

예결위안 : △2,009,786천원

수 정 안 : △2,255,666천원

아울러,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안으로 의결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u>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u>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표결방법) <u>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u>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u>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u>  <p style="text-align: center;">“세부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이나 거수표결로 할 수 있다.
- ②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한다.

제4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의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69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